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보훈 정책 기획 및 국제협력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종전에 복지증진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을 폐지하고, 보훈의료 정책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증진국’의 명칭을 ‘보훈의료복지국’으로 변경하며, 보훈의료복지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미서훈 독립유공자 조기 발굴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및 지자체·민간 등과의 협업을 통한 발굴 기반 확대 인력 1명(연구사 1명), 국립묘지 관리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 홍보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보훈정책 홍보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을 증원하면서 소속기관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제보훈 정책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의 명칭을 ‘국제보훈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 국립대전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행정직군 정원(9급)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삭제한다.

### 7.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제4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관 및 국제보훈협력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보훈협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제3항 각 호”를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국제보훈정책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협력담당관”을 “국제보훈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④ 국제보훈협력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 제2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제9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6호) 중 “건설지원 및 관리”를 “보존·관리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12호) 중 “독립·호국 및 민주화”를 “독립·호국”으로 한다.

9.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운영·관리

11. 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신규 건립지원

제10조의 제목 “(복지증진국)”을 “(보훈의료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증진국장”을 “보훈의료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복지증진국에 복지정책과·복지서비스과·보훈의료정책과”를 “보훈의료복지국에 보훈의료정책과·보훈의료재활과·복지정책과·복지서비스과”로 한다.

제10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1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중전의 제7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 제16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보훈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보훈의료수가 관리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훈의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의료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위탁진료 제도 개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3. 보훈위탁진료 제도 개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위탁 진료 적정성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의료기관 이용대상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응급·통원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위탁병원관리단 업무성과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우수인증위탁의료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신체·심리적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재활시설 건립 등 재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등의 재활체육에 관한 사항
13. 보철구에 관한 연구 및 지급계획의 수립·시행

제23조제3항 중 “(5급 1명)은”을 “(5급 1명),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7급 1명)은”으로 한다.

제9장(제28조)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333”을 “345”로, 일반직 계 “329”를 “341”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2”를 “23”으로, 행정사무관 “35”를 “36”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2”를 “43”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을 “4”로, 행정주사 “24”를 “25”로,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3”을 “56”으로,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6”을 “8”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6”을 “37”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심사기준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촬영 담당) 1”를 신설한다.

별표 5 중 총계 “337”을 “349”로, 일반직 계 “333”을 “345”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2”를 “23”으로, 행정사무관 “38”을 “39”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2”를 “43”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을 “4”로, 행정주사 “24”를 “25”로,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3”을 “56”으로,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6”을 “8”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6”을 “37”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심사기준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촬영 담당) 1”를 신설한다.

별표 6 중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3”을 “15”로, 열관리운영서기보 “2”를 “1”

로, 농림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6의2 중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을 “8”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1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62”를 각각 “861”로, 사무운영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0]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7조 관련)

|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
|------------------------|------------------------------------------------|-----------------|
| 1. 기획조정실 국제보훈협력관       | 1명<br>(고위공무원단 1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2. 보훈단체협력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 | 0명                                             | 2027년 6월 30일까지  |
| 3. 보훈문화정책실             | 1명<br>(고위공무원단 1명)                              | 2026년 3월 31일까지  |
| 4.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 5명<br>(4급 1명, 5급 2명,<br>6급 1명, 7급 1명)          | 2026년 3월 31일까지  |
| 5. 보훈문화정책실 현충시설정책과     | 5명<br>(4급 1명, 5급 1명,<br>6급 2명, 7급 1명)          | 2026년 3월 31일까지  |
| 6. 보상정책국 심사기준과         | 5명<br>(4급 1명, 5급 2명,<br>6급 1명, 전문경력관<br>나군 1명) | 2026년 3월 31일까지  |
| 7. 보훈의료복지국 보훈의료재활과     | 5명<br>(4급 1명, 5급 1명,<br>6급 3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대변인) ① · ② (생략)                                                                                                   | 제2조(대변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③ -----<br>-----.                                                                                                     |
| 1. ~ 6.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7.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구축</u><br><u>· 운영</u>                                                                               |
|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④ -----<br>-----.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u>5.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구축</u><br><u>· 운영</u>                                                                               | <u>&lt;삭제&gt;</u>                                                                                                     |
|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생략)                                                                                                    |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br>-----<br>-----<br><u>정책기획관 및 국제보훈협력관</u><br><u>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u><br><u>보훈협력관</u> -----<br>-----<br>--. |
| ③ 정책기획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u>제7조제</u>                                                                               | ③ -----<br>----- <u>제7조제3</u>                                                                                         |

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 설>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 ⑦ (생략)

⑧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9. (생략)

⑨ (생략)

제8조(보훈문화정책실) ① ~ ⑧ (생략)

⑨ 현충시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

④ 국제보훈협력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2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국제보훈정책담당관 -----  
-----  
-----  
-----.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⑩ 국제보훈정책담당관-----  
-----  
-----.

1. ~ 9.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제8조(보훈문화정책실)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⑩ 현충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생략)

3. (생략)

4. 5. (생략)

6. 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건립지원 및 관리

7. 국외 현충시설 매입, 매입 현충시설의 리모델링 및 운영·관리

8. (생략)

9.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운영·관리

10. 11. (생략)

12. 독립·호국 및 민주화 관련

9.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운영·관리

11. 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신규 건립지원

⑩ -----  
-----.

<삭 제>

2. (현행과 같음)

10. (현행 제3호와 같음)

3. 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5. -----  
-- 보존·관리 및 지원

<삭 제>

8. (현행과 같음)

<삭 제>

11. 12.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6. 독립·호국 -----

국외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⑪ ~ ⑭ (생략)

제10조(복지증진국) ① 복지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증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훈의료심의관으로 하며, 보훈의료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보훈의료심의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복지증진국장을 보좌한다.

④ 복지증진국에 복지정책과·복지서비스과·보훈의료정책과 및 생활안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⑪ ~ ⑭ (현행과 같음)

제10조(보훈의료복지국) ① 보훈의료복지국장-----  
-----  
-----  
---.

<삭 제>

<삭 제>

④ 보훈의료복지국에 보훈의료정책과·보훈의료재활과·복지정책과·복지서비스과-----  
-----  
-----.

⑤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

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신설>

⑦ -----  
-----.

1. ~ 14. (현행과 같음)

<삭제>

⑥ 보훈의료재활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의료기  
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위탁진  
료 제도 개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3. 보훈위탁진료 제도 개편 연  
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위탁  
진료 적정성 관리에 관한 사  
항

5. 위탁의료기관 이용대상의 결  
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는 공공단체의  
료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응급·통원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위탁병원관리단 업무성과 관

|                                                  |                                                  |
|--------------------------------------------------|--------------------------------------------------|
|                                                  | <u>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
|                                                  | <u>9. 우수인증위탁의료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
|                                                  | <u>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신체·심리적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u>       |
|                                                  | <u>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재활 시설 건립 등 재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u> |
|                                                  | <u>12. 국가유공자 등의 재활체육에 관한 사항</u>                  |
|                                                  | <u>13. 보철구에 관한 연구 및 지급 계획의 수립·시행</u>             |
| <u>⑥ (생 략)</u>                                   | <u>⑧ (현행 제6항과 같음)</u>                            |
| <u>⑦</u> 보훈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u>⑤</u> -----<br>-----.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u>9.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의료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u>           | <u>&lt;삭 제&gt;</u>                               |
| <u>10. 국가유공자 등의 의학적 재활에 관한 연구·개발</u>             | <u>&lt;삭 제&gt;</u>                               |
| <u>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재활 시설 건립 등 재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u> | <u>&lt;삭 제&gt;</u>                               |
| <u>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심리</u>                        | <u>&lt;삭 제&gt;</u>                               |

적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의 재활체육  
에 관한 사항

14. 보철구에 관한 연구 및 지급  
계획의 수립·시행

<신 설>

<신 설>

15. · 16. (생 략)

<신 설>

⑧ (생 략)

제23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  
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보훈  
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담  
당하는 1명(5급 1명), 국제 교류  
· 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  
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한다.

<삭 제>

<삭 제>

15. 보훈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사  
항

16. 보훈의료수가 관리에 관한  
사항

17. · 18. (현행 제15호 및 제16  
호와 같음)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  
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23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5급 1명),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7  
급 1명)은 ---.

|                                                                                                                                                                                                                                            |                                                     |
|--------------------------------------------------------------------------------------------------------------------------------------------------------------------------------------------------------------------------------------------|-----------------------------------------------------|
| <p><u>제9장 한시 정원</u></p> <p><u>제28조(한시 정원) 참전유공자 등</u><br/> <u>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u><br/> <u>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u><br/> <u>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u><br/> <u>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30</u><br/> <u>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u><br/> <u>원을 지방보훈청에 둔다.</u></p> |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u>333</u> | <u>345</u> | +12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 <u>329</u> | <u>341</u> | +12 |
| ·                  | ·          | ·          |     |
| ·                  |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u>22</u>  | <u>23</u>  | +1  |
|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              | <u>35</u>  | <u>36</u>  | +1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            |            |     |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 | <u>42</u>  | <u>43</u>  | +1  |
| 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            |     |
|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 <u>3</u>   | <u>4</u>   | +1  |
| ·                  | ·          | ·          |     |
| 행정주사               | <u>24</u>  | <u>25</u>  | +1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   |            |            |     |
| 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 <u>53</u>  | <u>56</u>  | +3  |
|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 <u>6</u>   | <u>8</u>   | +2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br>임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br>산주사보 | <u>36</u>          | <u>37</u> | +1 |
| ·                                             | ·                  | ·         |    |
| ·                                             | ·                  | ·         |    |
| <u>전문경력관 다군(사진촬영<br/>담당)</u>                  | <u>&lt;신 설&gt;</u> | <u>1</u>  | +1 |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u>337</u> | <u>349</u> | +12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 <u>333</u> | <u>345</u> | +12 |
| ·                  | ·          | ·          |     |
| ·                  |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u>22</u>  | <u>23</u>  | +1  |
|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              | <u>38</u>  | <u>39</u>  | +1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            |            |     |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 | <u>42</u>  | <u>43</u>  | +1  |
| 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            |     |
|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 <u>3</u>   | <u>4</u>   | +1  |
| ·                  | ·          | ·          |     |
| 행정주사               | <u>24</u>  | <u>25</u>  | +1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   |            |            |     |
| 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 <u>53</u>  | <u>56</u>  | +3  |
|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 <u>6</u>   | <u>8</u>   | +2  |

|                                                                                            |                                                      |                                                      |           |
|--------------------------------------------------------------------------------------------|------------------------------------------------------|------------------------------------------------------|-----------|
| <p>·</p> <p>·</p> <p>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br/>임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br/>산주사보</p> <p>·</p> <p>·</p> | <p>·</p> <p>·</p> <p><u>36</u></p> <p>·</p> <p>·</p> | <p>·</p> <p>·</p> <p><u>37</u></p> <p>·</p> <p>·</p> | <p>+1</p> |
| <p><u>전문경력관 다군(사진촬영<br/>담당)</u></p>                                                        | <p><u>&lt;신 설&gt;</u></p>                            | <p><u>1</u></p>                                      | <p>+1</p> |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립서울현충원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                                                       | ·         | ·         |     |
| ·                                                       |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br>임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br>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u>13</u> | <u>15</u> | +2  |
| ·                                                       | ·         | ·         |     |
| ·                                                       |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 <u>2</u>  | <u>1</u>  | -1  |
| ·                                                       | ·         | ·         |     |
| 농림운영서기보                                                 | <u>5</u>  | <u>4</u>  | -1  |
| ·                                                       | ·         | ·         |     |
| ·                                                       | ·         | ·         |     |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립대전현충원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br>·<br>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br>임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br>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br>·<br><u>7</u> | ·<br>·<br><u>8</u>           | +1  |
| ·<br>·<br><u>기계운영서기보</u>                                          | ·<br>·<br><u>1</u> | ·<br>·<br><u>&lt;삭 제&gt;</u> | -1  |
| ·<br>·                                                            | ·<br>·             | ·<br>·                       |     |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u>862</u> | <u>861</u> | -1  |
| 일반직 계   | <u>862</u> | <u>861</u> | -1  |
| ·       | ·          | ·          |     |
| ·       | ·          | ·          |     |
| 사무운영서기보 | <u>8</u>   | <u>7</u>   | -1  |
| ·       | ·          | ·          |     |